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48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2월 25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2월 3일 송경택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379호)과 같은 날 유정희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399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범주를 확대하여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, 명예시장 위촉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.
- 명예시장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명예시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사의 사회적 범주에 청년, 여성, 체육인을 포함하고, 정원 제한을 삭제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4항).
- 다.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5항).
- 라. 명예시장으로서의 시정참여, 정책제안, 소통·홍보활동 등을 수행 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”을 “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, 체육인”으로, “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”를 “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·장소, 참석자,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”을 “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<u>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8조(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명예시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----- <u>어르신, 청년, 여성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, 체육인 -----</u> -- <u>위촉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·장소, 참석자,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3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-----.</u></p>